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4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신정훈·조 국·이기헌

박희승 • 민형배 • 차지호

박홍배 • 임미애 • 조인철

소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였고, 지난해 농업소 득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9백만 원대로 추락하였음.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재배 농가 경제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하고, 양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위기 상황 시 양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

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며,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함.

주요내용

-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 나. 공공비축양곡을 미곡 · 밀 · 콩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 조).
-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 4 신설).
- 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한 경우 미곡의 호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 아.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 자.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 차. 선제적 수급조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제16조의6 신설).
- 카. 미곡 외의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법률 제 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보함으로써"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미곡·밀·콩"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을 "(양곡의 수급계획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년 정부관리양곡"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 3.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중 양곡에 관한 사항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양곡의 자급목표 등에 관한 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

곡, 밀, 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양곡에 대하여 적정 자급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공공비축양곡 및 수입양곡의 재고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무회의"를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로, "후"를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판매가격은"을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하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보관, 가공, 공급 등 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급량, 수요량, 추정, 생산단수, 벼와 타작물의 연도 별 적정 재배면적, 적정 재고량, 매입, 보관, 입고·출고, 가공, 운송, 매 출 현황 등을 포함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공공비축양곡의 비축 물량을 국제기준보다 확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입·판매가격"을 "매입·판매 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판매가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를 위한 밀, 콩 등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무수입양곡(「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른 의무수입양곡을 말한다)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무수입양곡 중 밥쌀용,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양곡은 수확기인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라 양곡의 매입이 필요한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방출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를 "방식, 매입·판매의 절차"로,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을 "필요한 한"으로 한다.

3.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16조의2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 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으"로 한다.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과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 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 3.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

물량, 매입 · 판매 시기 및 매입 · 판매가격

-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 면적 조정
-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
-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4(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제 고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및 논에 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 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논타 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경우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의5(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 수요, 재고 등 수급

- 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관기간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통계나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6(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손실을 보 전하는 사업
-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제16조의7(단체의 설립) ① 양곡의 생산자는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와

생산자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 제목 "(미곡유통업의 육성)"을 "(양곡유통업의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미곡의 유통기능"을 "양곡의 유통기능"으로,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 "미곡종합처리장, 콩종합처리장 등 양곡"으로, "미곡의 매입"을 "양곡의 매입"으로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양곡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양곡 매입 및 매입한 양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

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 홍보사업
-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
-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 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국산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
- 2.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 제1조(목적) -----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 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 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 ----- 확보하고 생산자 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 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 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 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 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 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 -- <u>미곡·밀·콩</u>----는 양곡을 말한다. 4. ~ 7. (현행과 같음) 4. ~ 7. (생략)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 (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을 세워야 한다. 양곡----.

-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②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2. (생 략)
- 3.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4. (생략)

- ③ (생략)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 1. 2. (현행과 같음)
- 3.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 정한 자급목표 중 양곡에 관 한 사항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하고, 지체 없 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양곡의 자급목표 등에 관한 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곡, 밀, 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주요 양곡에 대 하여 적정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 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 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② (생략)
-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 ③ ~ ⑤ (생 략)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
안보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
여 공공비축양곡 및 수입양곡의
재고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
여야 한다 <u>.</u>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 리위원회----- 후 국무
 - 회의의 심의를 거쳐 -----.
- ②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 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 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

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 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 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 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렁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의 매입, 보관, 가공, 공급 등 수 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공급량, 수요량, 추정, 생산 단수, 벼와 타작물의 연도별 적 정 재배면적, 적정 재고량, 매

<신 설>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 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 •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 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 입, 보관, 입고·출고, 가공, 운 송, 매출 현황 등을 포함한 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 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 영 ·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 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 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다.
- - ----- 하며, 공공비축양 곡의 비축 물량을 국제기준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 매입·판매 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

시장가격으로 한다.

<신 설>

④ (생 략)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생략)

<신 설>

<신 설>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판매가격---.

④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 급관리를 위한 밀, 콩 등 공공비 축양곡의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기업예산법」 제 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 회계에서 지출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무수입양곡(「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정부 간의 협정」에 따른 의무수입양곡을 말한다)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등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수입양곡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에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중 밥쌀용,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양곡은 수확기인 경우, 제16 조제3항에 따라 양곡의 매입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방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 1. 2. (현행과 같음)
- 3.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 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⑦ (생 략)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 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 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 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 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 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 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가 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 격으로 한다.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의판매

5	-
<u>빙</u>	-
<u>식, 매입·판매의 절차</u>	_
	-
	-
필요한	-
	-
	-

⑥·⑦ (현행과 같음) 세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재배면적 관리)
<u>「농업·농촌 공익기능</u>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
<u>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으</u>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 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 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 3.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 입·판매물량, 매입·판매 시

- 기 및 매입・판매가격
-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

 면적 조정
-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 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 다.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

 정책관
-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 측본부장
-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 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

<u><신 설></u>

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은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 산자단체 대표

-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 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 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 문성을 가진 사람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기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 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 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및 논에 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논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 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단 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 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 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작물을 개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 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5(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신 설>

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 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 수요, 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 집, 분석, 관리하기 위한 미곡수 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 관기간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통계나 자료의 입력 또 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의 구축・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신 설>

<신 설>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공 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 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

 자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제16조의7(단체의 설립) ① 양곡의 생산자는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와 생산자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 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 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 여야 한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농업 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u>미곡의 유통기능</u>을 능률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

-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 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지도·감독 및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제22조(양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양곡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 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 자로부터의 양곡 매입 및 매입 한 양곡의 건조·선별·보관· 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 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u> <u>자치단체장</u>-------- 양곡의 유통기능-----

는 자에게 <u>미곡종합처리장 등</u> 미곡을 건조·보관·가공·유 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 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미곡종합처리장, 콩충	<u>돈</u>
합처리장 등 양곡	_
	_
<u>양곡의 매입</u>	_
	_

- ③ (현행과 같음)
-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 비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 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
 -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국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u>있다.</u>
1.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
2.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개
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